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2월 13일

○ 회부일자 : 1993년 12월 13일

3. 폐지 이유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하도록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04호, 93. 11. 13)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교육법시행령 제69조(입학 등의 허가) 제5항에 근거.

5. 검 토 의 견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입학할 중학교의 추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04호, 1993. 11. 13)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

한편 당해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폐지조례안의 제명은 ○○○조례폐지 조례안으로 하고, 안 본문에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폐지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